

국제인도법 논문 투고 규정

1. 논문은 본 기고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송된다.
2. 논문 제출시 원고 6부와 파일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3.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인도법연구소 CD-ROM이나 광디스크를 제작 판매하거나 모든 전자매체에 의한 전송 제공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5.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6.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0 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5매 내외로 한다.
7. 각주는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오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필자 표기

- (1)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필자표기
 - 2인인 경우, 2인의 이름을 모두 밝힌다.
 - 3인 이상인 경우, “000 외”로 표기한다.
- (2) 기관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2) 문헌명 표기

- (1) 저서이든 논문집이든 그 밖의 문헌이든 전체책명의 표기는 국문인 경우 『 』로, 영문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2) 논문이든 그 밖의 글이든(신문기사 포함) 책의 일부로서 발표된 모든 글은 “ ”로 표기한다.

3) 발행년월일 표기

- (1) 저서 및 기타 단행본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 (2) 연간 간행물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 (3) 논문집 기타 연2회간 이상 월간까지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권·호수 및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 (4) 주간지 및 일간지인 경우,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나. 인용문헌별 표기

1) 저서

- (1) 요령
 - (가) 국문, 일본어 및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 』로 표기한다.
 - (나)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또는 밑줄을 그어서 표기한다.
- (2) 예시
 - (가) I. Brownlie, *System of the law of Nations - State Responsibility, Part I*(Oxford:Clarendon Press, 1983), p.29.
 - (나) 洪吉童, 『國際法』, 第7改訂版 (서울 : 한국서점, 1996), 234쪽.
 - (다) 上掲書, 298쪽.
 - (라) Brownlie, *supra* note 1, p.272.
 - (마) *Ibid.*
 - (바) 洪吉童, 前掲書, 756쪽.

2)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 (1) 요령
 - (가) 모든 논문제목은 “ ” 속으로 넣어 표기한다.
 - (나) 논문이 게재된 문헌명은 저서명 표기와 같이 처리한다.
 - (다) 논문이 게재된 문헌은 그 해당권호와 발행년월을 밝힌다.
 - (라) 반복인용시 저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 (2) 예시
 - (가) 金甲東, “韓日間の 海洋境界劃定”, 『인도법논총』, 제00권 제1호(1999. 6), 95-98쪽.
 - (나) A. Re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e Draft of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the UN/ECE Task Force", *Environment Policy and Law*, vol.22, No.1, 1992, p.37.

3) 학위논문

(1) 일반사항

- (가) 저자명, 논문명과 함께 학위수여대학명 및 제출년도를 명시한다.
- (나) 반복인용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2) 예 시

- (가) 김길동, 『국제법편찬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계대학교, 1998, p.149.
- (나) D. Whiteface, *The Jurisdictional Criminal Court*, J.S.D. dissertation, Peace Univ., 1998, p.339.

4) 편집된 책속의 일부로서의 글

(1) 일반사항

- (가) 해당글의 필자명 및 제목과 함께 그 글이 실린 책명과 편집자명을 함께 명시한다.
- (나) 반복인용시 일반적인 논문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2) 예 시

- (가) 이순신, “국제법의 규범체계”, 아시아국제법연구원(편), 『국제법의 기본문제』 (서울 : 세계출판사, 1998), 281쪽.
- (나) E. J. de Arechag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M. Sørensen(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London : Macmillan, 1968), pp. 535-534.

5) 자 료

(1) 국제사법재판소 및 중재법정 판례

- (가) 공식인용지침을 따른다.
- (나) 예시 :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p.32.

(2) 국제법위원회 연감

예시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 II, part I, pp.98-99.

(3) 헤이그 아카데미 강의록

예시 : S. E. Nahlik, "Development of Diplomatic Law – Selected Problems", *Recueil des Cours* [de l'Acade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1990-III, p.255.

(4) 일간지

예시 : 홍길동, “한일간 어업분쟁”, 『00일보』 (1997. 11. 12), p.7.

(5) 기타자료들은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호수, 발행년월, 페이지의 순으로 게재한다.

(권호수 및 발행년월 대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해당자료의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게재한다.)
예시 :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eventh session, 2 May-21 July 1995, A/50/10*, pp.21-24.